

역량교육센터 규정

- 제정 : 2020. 3. 13.
- 개정 : 2020. 11. 9.
- 개정 : 2021. 12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역량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센터는 본교의 핵심역량교육 관련 업무지원을 통해 본교가 추구하는 창의융합 미래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본교의 비전, 교육목표, 인재상에 연계한 핵심역량 도출 및 정의
2. 대학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역량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
3. 핵심역량, 직업기초역량 진단 및 결과 분석
4. SSC MVP역량인증제 관리
5. 역량기반 교육과정 품질 관리
6.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
7. NCS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
8.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 개발
9. 그 외 본 센터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센터장) ① 본 센터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본 센터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장 외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본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역량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역량기반 교육과정 품질관리

제5조(역량기반 교육과정 품질관리) 센터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역량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역량기반 교육품질을 관리한다.

-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 품질관리를 위해 학기별 전공, 교양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.
- ② 역량기반 교육과정 품질관리를 위해 학기별 역량성취도 결과를 수합하여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.
- ③ 역량기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4 장 역량인증

제6조(역량인증운영) ① 센터는 본교에서 규정한 핵심역량 및 각 학과에서 규정한 전공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인증제를 운영·관리한다.

- ② 재학 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성취 정도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, 졸업 시 역량 인증서를 발급한다.
- ③ 역량인증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제 5 장 재 정

제7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총당한다.

제8조(예산 및 결산)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해산)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